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A)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개정(공포 '22.11.29., 시행 '24.12.1)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(안 제3조)
- 나.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함(안 제14조 신설)